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130 호  
2018년7월11일(수)

여 수 시 보

시 정 방 침

- 1. 시민공감
- 1. 균형있는
- 1. 사람중심
- 1. 품격있는
- 1. 살기좋은
- 감동상나눔
- 동생문화
- 정북관
- 경제지
- 환경

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고 시】

○여수시 고시 제2018-226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(삼산면 소거문도 방파제 연장고사 외1건) /3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8-1603호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결정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/4
- 여수시 공고 제2018-1606호 도로지정(변경) 공고(돌산읍 둔전리 243-1) /5
- 여수시 공고 제2018-1607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/6
- 여수시 공고 제2018-1610호 2018.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/7
- 여수시 공고 제2018-1612호 폐업사실 소명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/15

회								
람								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을 승인(신고)하고 고시합니다.

승인 (신고) 번호	실시계획 승인(신고) 수리	시 행 자		사업착수 예 정 일	사업준공 예 정 일	점용·사용 장 소	공사내용
		주 소	성 명				
2018-81	2018.7.10.	여수시 시청로 1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2018.7.9.	2018.12.10.	삼산면 손죽리 산475번지 지선	소거문도 방파제 연장공사
2018-82	2018.7.10.	여수시 시청로 1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2018.7.9.	2018.6.19.	삼산면 손죽리 산224-1번지 지선	평도방파제 연장공사

2018. 7.

여 수 시 장

# 공 시 송 달 공 고

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였으나, '2회 배달 후 우체국 보관기일 경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8. 7. 10.

## 여 수 시 장

- 기 간 : 2018. 7. 11. ~ 2018. 7. 24.(14일간)
- 공고방법 : 시보, 게시판, 여수시홈페이지
- 내 용

1. 통지의 제목		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결정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			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이 진 *		등록번호	*****-2024326		
	주 소	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**-**, **					
3. 통 지 내 용		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과태료 납부 안내					
4. 기타 (문의처)	제 출 처	기관명	여수시청	부서명	민원지적과	담당자	이정태
		주 소	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				
		연락처	061-659-3351 (Fax 061-659-5810)				

##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243-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변경 지정 · 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구분	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 <sup>2</sup> 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	
당초	계		27.1m	1.76m	24m <sup>2</sup>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	
변경	계		27.1m	1.76m	25m <sup>2</sup>			
당초	돌산읍 둔전리	243-1 번지	13.1m	0.76m	10m <sup>2</sup>	"		
			14m	1m	14m <sup>2</sup>			
변경	돌산읍 둔전리	243-1 번지	13.1m	0.76m	11m <sup>2</sup>			
			14m	1m	14m <sup>2</sup>			
	이하빈칸							

※ 도로지정공고(당초) : 여수시 공고 제2018-1243호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7. 11.

# 여 수 시 장

##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.

### ◆ 어업면허 처분 내역 ◆

면허 번호	어업의 종류	시설 방법	면적 (ha)	어장 위치	면허기간	수산자원 조성금 (천원)	어업권자		비고
							주소	성명	
10407	마을어업	-	13.5	화양 오천	2018.08.26. 2028.08.25.	-	여수시 화양면 이천리	오천 어촌계	10132 재개발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18. 07. 11.

# 여 수 시 장

## 『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』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
「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(지원), 제4조(지원신청)」규정에 의거 음식점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접객문화를 정착하고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소를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11일

## 여 수 시 장

1. 공고기간 : '18. 7. 11. ~ 7. 26.(15일간)
2. 지원대상 : 8개소(음식업소)
3. 사업기간 : 2개월
4. 보조사업 내용
  - 총사업비 : 업소당 2,000천원 이상(시비 50%, 자부담 50% 이상)
  - 지원액 : 시비 1,000천원 이내
  - \* 총사업비(시비, 자부담)가 2,000천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 재산정
5. 신청·접수방법
  - 접수기간 : 2018. 7. 24. ~ 7. 26. 18:00까지
  - 제출서류(서식 1~5)
    -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 1)
    -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(서식 2, 서식 3)
    -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청렴이행서약서(서식 4)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 5)
  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  
(여수시 시청서4길 47. 식품위생과 / 접수기간 내 소인까지 인정)
6. 선정결과 : 개별통지

## 7. 유의사항

○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별도 보조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,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(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)

○ 최종 선정된 업소의 사업추진은 여수시 기본 계획(일정, 예산, 방법 등)에 따라 수정·추가될 수 있음.

○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.

○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및 영업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식품위생과(☎061-659-4351)로 문의 바랍니다.



(서식 2)

# 사업계획 요약서

## ◆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

단체 현황	업 소 명					
	등록기관		등 록 일			
	상근 직원수(명)		비상근 직원수(명)			
사업 개요	사 업 명		사업기간			
	사업목적					
	사 업 비 (단위:원)	계	지원신청액	자부담	자부담비율(%)	
	사업대상					
	사업효과					
사업 내용	○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					
사업비 산출내역	○ 총 사업비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 - 입식테이블 구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 ×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개 =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 (의자포함)					
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	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(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, 사진,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)					
전년도 보조사업 실적	사 업 명					
	사 업 비	천원	보조금	천원	자부담	천원( %)
	사업효과					

(서식 3)

# 사업계획서

## □ 사업개요(총괄)

※ 반드시 1매(Page)로 작성

보조 종류 1) : 민간자본사업보조

업 소 명						
사 업 명	2018.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					
사업기간			사업지역			
사업대상			대상자수 (실인원수)			
사업목적	선진 음식접객문화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 시설이용 편의 도모					
사업내용	세부사업명	주 요 내 용				
	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	입식테이블 설치 :        개(의자        포함)				
예 산	총 사업비	원	보조금 신청금액	원	자부담	원
신청금액 (보조금)의 세부내역2)	사업비	원	○ 입식테이블 구입 - 입식테이블 :        원(의자 포함)			
		100%	○ 산출기초(예시) 500,000원 * 2개 = 1,000,000원			

1)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(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, 운수업계보조, 사회복지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)

2)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

□ 사업비 집행계획 3)

(단위:원)

단 위 사업명	재원	지출 비목	지출내역	금액	산출내역
합계				2,500,000	
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	자부담	계		2,500,000	
		구입비	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	1,500,000	▫ 250,000원 * 6개 = 1,500,000원 (의자 포함)
		-	-	-	-
	보조금	계		1,000,000	
		구입비	음식점내 입식테이블 구입 설치	1,000,000	▫ 500,000원 * 2개 = 1,000,000원 (의자 포함)
		-	-	-	-

<작성요령>

- ① 세부사업명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  - ② 지출비목 : 강사료, 홍보비, 공공요금, 물품구입비,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
  - ③ 지출내역 :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
  - ④ 금 액 : 원 단위로 작성
  - ⑤ 산출내역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  - 기재방법 : 단가(원)×개 = 000원
    - 산출내역(기초)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
    -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
- ※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

3)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

##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,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벌칙 규정 >

#### 「지방재정법」

#####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)
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#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98조)

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####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##### ○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(제29조)

-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,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,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

2018. . .

업소명: 대표 (서명)

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(서명)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여수시 식품위생과 에서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,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I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,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○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·이용 목적

가. 수집항목
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음식점소 운영사항 등

나. 수집 및 이용 목적

-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 관리

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○ 동의거부 관리

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,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의 수집/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

동의안함

2018년

월

일

성명 :

(서명)

※ 동의함  / 동의안함 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## 폐업 사실 소명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제12호에 따라 폐업사실이 통보된 해당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11일

## 여 수 시 장

1. 공고내용 :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

2. 대상업체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업 종	내 용	제출기한
(합)백승건설 백용진	도원로157, 201호(선원동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거창2002-10-05	폐업사실확인 소명자료 제출	2018. 7.27.(금)

3. 공고기간 : 2018. 7.11.~7.26.(15일)

4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시보

5. 공고내용

-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여수시 도시계획과에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 의 :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(☎061-659-4005)